

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1. 9. 29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9월 18일 이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9월 19일

다. 상정일자 : 제49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
제1차(2001. 9. 26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복지국장 윤희문)

가. 제안이유

- 청소년 시책에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청소년 시책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함.
-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법적 보장을 확보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목적 : 청소년으로 구성된 차세대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기능 : 청소년관련 정책 자문 및 업무 협조(안 제3조)
- 구성 : 중·고·대학생으로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 (안 제4조)
- 위촉자격 :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청소년(안 제5조)
- 임기 : 1년,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(안 제6조)

- 위원장의 직무 : 위원회의 대표, 위원회의 업무 통괄(안 제7조)
- 회의 : 분기별 1회 원칙, 시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시(안 제8조)
- 수당등 : 조례에 의거 수당·여비등 필요 경비지급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창화)

-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정책의 수립·집행·평가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 수렴하여 청소년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고,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
- 안 제1조는 목적규정을 두었으며
- 안 제2조에는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규정을 두었고
-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시 및 시의 다른 기관·단체의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, 도 및 타 시·군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, 시의 청소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규정하였으며
- 안 제4조는 위원회는 중·고·대학생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·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남·여 각 1인으로 한다고 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였고
- 안 제5조는 위원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학중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,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위원 2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
- 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
-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였고,
-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

-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
- 입법형식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시의 자치조례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, 2000년 6월 17일 구성된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출범이후 시·군 차세대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제정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부 결(만장일치)

• 부결사유

-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문내용 누락 등 목적 제시가 미비하고
- 위원회의 기능중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며
- 위원회 구성중 청소년에 대한 사실적 구분없이 광의적이고, 관내 학교 수를 감안하지 않고 학교별 1인 학생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은 위촉위원수의 범위로 인해 배제되는 학교 및 학생이 발생될 수 있으며, 위원회 회의등 운영에 관련 공무원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운영 부실이 예상되며
-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자의 범위중 소속 단체장은 단체의 범위가 명확치 않음으로 인해 배제 단체가 발생될 경우 형평성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역효과가 우려됨.

7. 기타사항 : 없 음